

의안 번호	85
----------	----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보건복지위원회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2023. 02. 21.

전문위원 김 동 성

1. 제안경위

가. 제 출 자 : 성북구청장

나. 의안번호 : 제85호

다. 제출일자 : 2023. 02. 09.

라. 회부일자 : 2023. 02. 13.

2. 제안이유

- 미래의 주역인 영유아에게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맞벌이 부모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여 저출생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고자, 공동주택 관리동에 현재 운영 중인 민간어린이집의 국공립 전환을 통한 국공립 어린이집 신규 설치와 기존에 운영 중인 국공립어린이집 중 위탁기간이 2023년 12월에 만료되는 시설의 재위탁을 추진하기에 앞서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제3항에 따라 민간위탁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위탁대상 :

- 신규위탁 대상 : 국공립 어린이집 1개소(정릉햇살가득 어린이집)
 - 위탁기간 : 개원일로부터 5년
 - 위탁체 선정 : 영유아보육법 제24조 2항에 따라 기존 설치·운영자에게
최초 운영권 보장
- 재위탁 대상 : 은성어린이집 등 3개소
 - 위탁체 선정 : 성북구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재위탁 여부 결정(2023.09예정)

나. 위탁사업의 범위 :

-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사항
- 시설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기타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영유아보육법」 제24조

「지방자치법」 제117조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5. 검토의견

□ 동의안 개요

- 본 동의안은 ‘국공립 어린이집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무를 민간위탁으로 추진 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이하 “민간위탁 조례”)제4조제3항에 따라 성북구의회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것임.

□ 주요내용

- 첫째, 정릉1동 대림e-편한세상2차아파트 내 정릉햇살가득 어린이집이 2023년 3월 국공립으로 전환(2022년 6월 제2차 서울시 국공립확충심의 승인)예정임 에 따라 현 설치 운영자에게 계약일로부터 5년간 위탁하려는 것이며,
- 둘째, 기존 국공립어린이집 중 은성 어린이집 등 3개소의 위탁기간이 2023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보육정책위원회 심사를 거쳐 재위탁하려는 것임. 위탁대상 현황은 다음과 같음.

〈신규 및 재위탁대상 시설현황〉

연번	시설명(원장)	소재지(행정동)	현 위탁체(대표)	정원/현원	비고
신규	정릉햇살가득 어린이집	북악산로 851 관리동 1층 (정릉1동)	관리동 민간어린이집 전환	29	2023년 3월 국공립으로 전환 하여 개원 예정
재위탁	은성 어린이집 (우 지 혜)	종암로24가길 80 106-101 (종암동)	개인 (우 지 혜)	20/20	구 소유 (2018.11.매입)
재위탁	정릉제일 어린이집 (박 민 정)	정릉로31가길 46 (정릉4동)	대한예수교장로회 정릉제일교회 (김 기 남)	40/34	구 소유 (2018.11.매입)
재위탁	종암중앙 어린이집 (이 유 진)	종암로19길 18 (종암동)	대한예수교장로회 종암중앙교회 (조 성 환)	75/58	무상사용협약 (2014.3.1.~2028.2.28.)

□ 민간위탁의 적정성

- 「영유아 보육법」 제12조제1항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4조제2항 및 「서울특별시 성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이하 “보육조례”) 제13조제1항에 국공립어린이집을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어 민간위탁 사무로서의 그 법적 요건을 갖추고 있음.
- 위탁기간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의2 별표 8의2¹⁾, 「보육조례」 제14조 제1항에서 어린이집의 일관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5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적법함.
- 수탁기관 선정에 있어서는 국공립 전환 신규어린이집은 「영유아 보육법」 제24조 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므로 공개경쟁이 아닌 기존 운영자에게 운영권보장이 가능하며,

< 영유아 보육법 >

제24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국공립어린이집을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에 따라 심의하며, 최초 위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자에게 위탁하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른다.

1. 민간어린이집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여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경우 기부채납 전에 그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한 자
2.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시 해당 부지 또는 건물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자
3. 「주택법」에 따라 설치된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경우 전환하기 전에 그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한 자

1)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별표 8의2]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제24조의2 관련)

다. 위탁기간은 어린이집의 일관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5년으로 한다. 다만, 원장의 잔여 임기가 5년 미만인 경우 등 조례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위탁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 재위탁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제7항 및 「보육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라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존 수탁자에 한하여 재위탁 하는 경우 이므로 관련 규정에 적합하다 판단됨.

< 영유아 보육법 시행규칙 >

제24조(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위탁) ⑦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기존 수탁자의 제6항에 따른 보육 관련 사업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보육정책위원회 또는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기존 수탁자에게 어린이집의 운영을 재위탁할 수 있다.

□ 종합의견

- 이상을 종합해 보면 본 동의안은 「민간위탁 조례」 등의 관련 규정에 따라 제출된 동의안이며, 사무의 민간위탁 요건도 충족하고 있는 바, 본 민간 위탁 및 재위탁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